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35

발의연월일 : 2020. 11. 17.

발의자 : 김윤덕 · 장경태 · 윤재갑
 강민정 · 전용기 · 박상혁
 강훈식 · 김수홍 · 이정문
 임종성 · 홍기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에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함)에게는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각종 업무를 수행하려면 현행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등 기본적으로 현행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으나, 유지관리업자는 현행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어,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동일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제재처분이 달라지는 등 이들에 대한 일관적이고 평등한 관리·규율에 어려움이 있음.

아울러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에는 각종 검사 및 시험 실시 외에도 시설물의 결함과 손상을 보수·보강하는 작업 등도 포함되는 만큼, 유지관리업자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다른 사업자들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고 있음.

이에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지관리업자에 관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안전점검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26조제1항).
- 나.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함(안 제28조의2 신설).
- 다.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39조제2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을 “제28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안전점검전문기관”이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건설사업자”라 한다) 또는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3항 중 “유지관리업자”를 각각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지관리업자”를 각각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하

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변경등록, 등록증의 발급·재발급, 휴업·재개업·폐업신고, 결격사유, 명의대여의 금지 및 영업 양도 등에 관하여는 제28조(제28조제1항은 제외한다), 제29조, 제30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는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으로 본다.

법률 제17751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간 계산 시 제28조제6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를 “[기간 계산 시 제28조제6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본문 중 “제28조제1

항”을 “제28조제1항 또는 제28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본문 중 “제29조”를 “제29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30조”를 “제30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사업자가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같은 조 제2항의 요청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유지관리업자는”을 “안전점검전문기관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유지관리업자는”을 “안전점검전문기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유지관리업자로”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유지관리업자”를 각각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한다.
제35조 중 “유지관리업자가”를 “안전점검전문기관이”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지관리업자는”을 “안전점검전문기

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유지관리업자가”를 “안전점검전문기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유지관리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55조제1항제8호 중 “제31조제1항”을 “제31조제1항, 제35조”로, “영업정지”를 “영업정지, 시정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제28조의2, 제31조제1항, 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제65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수행한 자

법률 제17551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제67조제3항제11호 중 “제28조제3항”을 “제28조제3항(제28조의2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제28조제6항”을 “제28조제6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제38조”를 “제38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35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지관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유지관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본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에도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유지관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본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에도 유지관리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업자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의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이 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유지관리업자가 행한 행위 또는 해당 유지관리업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 시행 이후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이 행한 행위 또는 해당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p>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안전진단전문기관 · <u>국토안전관리원</u> 또는 <u>유지관리업자</u></p> <p>3. (생략)</p> <p>③ · ④ (생략)</p> <p>제18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 (생략)</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 시장 · 군수 · 구청장,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u>유지관리업자</u>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 ⑥ (생략)</p>	<p>② -----.</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 <u>안전점검전문기관</u> 또는 <u>국토안전관리원</u></p> <p>3. (현행과 같음)</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18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u>안전점검전문기관</u> -----.</p> <p>-----.</p> <p>-----.</p> <p>-----.</p> <p>-----.</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	--

<p>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한 차례만 하도급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③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 <u>유지관리업자</u>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안전진단전문기관</u>의 경우: 시 · 도지사 2. <u>유지관리업자의 경우:</u>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 3. (생 략) <p>④ · ⑤ (생 략)</p> <p>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u>유지관리업자</u> 또는 국토안전관리원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u>안전점검전문기관</u>-----</p> <p>-----</p> <p>-----</p> <p>-----</p> <p>-----</p> <p>-----</p> <p>-----.</p> <p>1. <u>안전진단전문기관</u> 및 <u>안전점검전문기관</u>-----</p> <p>-</p> <p><삭 제></p> <p>3. (현행과 같음)</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⑥ -----</p> <p>-----</p> <p>-----</p> <p>-----<u>안전점검전문기관</u>-----</p> <p>-----</p> <p>-----</p>
--	--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

제28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변경등록, 등록증의 발급·재발급, 휴업·재개업·폐업신고, 결격사유, 명의대여의 금지 및 영업양도 등에 관하여는 제28조(제28조제1항은 제외한다), 제29조, 제30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는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으로 본다.

법률 제17551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법률 제17551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6. ~ 8. (생 략)

9.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9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30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12. ~ 17.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유지관리업자가 다음

6. ~ 8. (현행과 같음)

9. 제28조제1항 또는 제28조의2제1항

-----.
-----.
-----.
-----.

10. 제29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11. 제30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12. ~ 17. (현행과 같음)

<삭 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1.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의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8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損壞)나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킨 경우

4. 제20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범위를 위반한 경우

5. 제27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한 경우
6. 최근 2년간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
8. 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9.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사업자가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에 따

20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에 대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① 안전진단 전문기관 및 <u>유지관리업자는</u>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한 경우 관리주체 등에게 그 실시결과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그 대행실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① ----- ----- <u>안전점검전문기관은</u> -----.
1. ~ 3. (생략) ② 시·도지사는 매년 <u>안전진단전문기관</u> 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u>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u>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관리하	③ -----.

여야 하며,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른 대행실적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생략)

제39조(시설물의 유지관리) ①

(생략)

②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업자
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
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
내인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여
금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안전점검전문기관이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시설물의 유지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사업자

③ (현행과 같음)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p>의 구축 · 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p> <p>1. ~ 7. (생 략)</p> <p>8. 제28조, <u>제31조제1항</u>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 · 재개업 또는 폐업신고, 등록취소, <u>영업정지</u>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p> <p>9. <u>제31조제2항</u>, 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의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p> <p>10. ~ 13. (생 략)</p> <p>② ~ ④ (생 략)</p> <p>제65조(별 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p>	<p>의 구축 · 운영 등) ① ----- ----- ----- ----- ----- -----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 <u>제31조제1항</u>, 제35조 ----- ----- ----- ----- ----- ----- <u>영업정지</u>, <u>시정명령</u> ----- ----- 9. <u>제28조의2</u>, 제31조제1항, 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 · 재개업 또는 폐업신고, 등록취소, <u>영업정지</u>, <u>시정명령</u>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p> <p>10. ~ 1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65조(별 칙) ① ----- -----</p>
--	---

<p>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7. (생 략)</p> <p><u><신 설></u></p> <p>8. ~ 11. (생 략)</p> <p>② (생 략)</p> <p>법률 제17551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p> <p>제67조(과태료) ① · ② (생 략)</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10. (생 략)</p> <p>11. <u>제28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u></p> <p>12. <u>제28조제6항에 따른 휴업 · 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u></p>	<p>-----.</p> <p>1. ~ 7. (현행과 같음)</p> <p><u>7의2.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안전점검 또는 긴급 안전점검을 수행한 자</u></p> <p>8. ~ 11.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법률 제17551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p> <p>제67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u>제28조제3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p> <p>12. <u>제28조제6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p>
--	---

	--
13. · 14. (생 략)	13. · 14. (현행과 같음)
15. <u>제38조에 따른 영업의 양도</u> 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5. <u>제38조(제28조의2제2항에서</u> <u>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

16. ~ 19. (생 략) ④ (생 략)	16. ~ 19.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